

1997. 12.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결과

조례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97.12. 4	'97.12. 9	'97.12. 26	'97.12. 27	지역계획과장
충주시지역농업센터설치운영조례안	'97.12. 20	'97.12. 22	"	"	사회지도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1) 제안이유

- 온천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수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할수 있는 자격요건(안 제4조)
- 공동급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6조)
-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안 제7조)
- 온천수 공급에 따른 보증금예치(안 제10조)

나.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종 시험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농촌지도소가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자 충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농업시험연구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확보에 관한 사항
-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겸임보고 요지

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 현재 충주시 온천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고시에 의하여 운영하였던 바
- 1997. 1. 13. 온천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됨에 따라
 -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안 제4조)
 - 공동급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6조)
 -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안 제7조)
 - 온천수공급에 따른 보증금예치(안 제10조) 등중요한 분야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음.
- 그러나 온천수사용료 조정(안)에 대하여는
- 충주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전체위원 25명중 23명이 찬성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1안 ~ 5안중, 1안(현행유지 0명), 2안(4.5%인상 2명), 3안(45.9%인상 5명), 4안(146.3%인상 16명), 5안(231.8%인상 0명) 중 4안인 146.3%인상된 금액이 현재 공기업상수도 m^3 당 요금과 동일 금액으로서
- 숙박업소 객실욕탕 m^3 당 480원에서 533원으로 (111.0%)
특수목욕장 m^3 당 280원에서 468원으로 (167.1%)
일반목욕탕 m^3 당 217원에서 280원 (129.0%)
공공목욕탕 m^3 당 217원에서 400원으로 (184.3%)

- 평균 146% 인상의 요금은 1월 2,100㎡기준 사용료로 ㎡당 충주시가 643원, 유성 온천 ㎡당 866원, 부산 ㎡당 745원, 부곡온천 ㎡당 460원, 을진먹곡온천 ㎡당 269원등 지역적인 요금의 차이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요금 조정안은 인상의 폭은 크나 주변온천 지역 요금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경제의 어려움과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됨.

나.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 과학영농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 보다 발전된 충주지역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새기술, 새품종 지역특화 작목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와 운영방법에 관한 기준이 필요 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 질의 |

-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 답변

- 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으로는 검찰청충주지청검사,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권순옥의원, 정우택의원, KBS방송부장, MBC총무국장, 충주신문사장, 산업대부교수 상공회의소회장, 농협지부장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 |

- 현재 경기불황으로 수안보통에 관광객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온천수 사용료를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

- 현재 온천수 사용요율은 '92년도에 충북지사가 고시결정한 것이며 년간 세입은 2억 6천만원, 세출은 4억원으로서 1억 4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질의 |

- 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현금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지?

☞ 답변

- 보증보험도 가능함.

| 질의 |

- 온천수 사용료의 경우 대중목욕탕은 168%가 인상되는데 경기불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로서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니 시차를 두고 결정토록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

- 조례안의 기본사용료는 절대적이 아니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대로 운영 하겠음.

| 질의 |

- 일반 대중목욕탕 온천수 사용의 기본량을 확대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

- 상수도 요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음.

4.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질의)

-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수준은?

☞ 답변

- 지도소내에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종합검정실, 식품가공연구소, 생활과학관 농기계공작실, 병해충예찰실, 실증시험포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장비가 매우 미약함.

(질의)

- 개발센터 직원은 별도로 둔다고 했는데 신규채용하는 것인지?

☞ 답변

- 현재 지도소에는 농촌지도직, 별정직, 기능직이 있으나 앞으로 개발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함임.

(질의)

- 개발센터 운영 및 교육 이수에 따른 소요경비를 시에서 부담하지 말고 교육대상자가 부담하게 할수 없는지?

☞ 답변

- 현재로서는 농민에게 소요경비를 부담하게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5. 수정안 요지

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 [별지 1]

나.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 [별지 2]

6. 심사결과

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수정의결

나.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7. 붙임

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나.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온천지구내에서 글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안보온천이라 함은 상모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의 온천지구내 충주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2. 사유온천이라 함은 충주시 관내에서 온천발견자가 신고하여 수리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3. 온천이용자라 함은 온천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으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각온천지구별 개발계획 구역내로 한다.

제4조 (공동급수권자) 온천공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직접 공동급수권자가 되거나 온천공발견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온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중에서 공동급수 시설을 갖춘자로 한다.

제5조 (급수대상) 수안보온천의 급수대상은 이조례 시행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수공급계약체결자에 한하며, 사유온천은 같은 온천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거 온천수 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에 한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공급계약) ①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요금

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온천수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1월 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온천수공급계약을 체결한자가 변경되었을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등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①수안보온천의 온천수 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의한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으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한금액으로 한다.

②사유온천의 온천수사용료는 급수권자와 온천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별표요금의 두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준용)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충주시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34조의 급수장치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되 온천수 계량기의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수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정지) ①공동급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월이내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공동급수권자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급수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8.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관계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1. 급수장치의 고장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시킨자
12.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 제수변설치 전에는 계량기 인입전에 봉인하고 제수변 설치 후에는 봉인금수 정지하고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한다.

제10조 (보증금 예치) ①온천수의 원활한 공급 및 예비수량 확보를 위하여 온천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예치하여 온천개발에 필요시 사용하고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온천이용허가 기간으로 하며, 그 금액은 수안보온천은 25,000,000원 범위로 하되 사유온천에 대하여는 두배를 초과치 못한다. (단, 수안보온천은 신규이용허가와는 명의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②온천수사용료를 체납한자가 납부치 않을시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록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수 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온천수 공급계약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용료는 1998년 2월 사용료 고지지서 발행일부터 적용한다
-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수안보온천수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온천수 사용요금표

(1개월 기준)

종 별	기본요금		초과요금					
	사용량 (m ³)	사용료 (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용량 (m ³)	사용료 (원)	사용량 (m ³)	사용료 (원)	사용량 (m ³)	사용료 (원)
숙박업법에 의한 숙박업소 객실 욕탕	30까지	16,000	31 ~ 50	660	51 ~ 100	900	101이상	1,000
공중목욕장업법 에 의한 특수목욕장	200까지	93,600	201 ~ 300	760	301 ~ 500	1,150	501이상	1,550
공중목욕장업법 에 의한 일반목욕장	200까지	56,000	201 ~ 300	550	301 ~ 500	600	501이상	700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설치한 공공용 욕실	20까지	8,000	21 ~ 50	600	51 ~ 100	740	101이상	790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농업개발센터(이하“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개발센터는 충주시농촌지도소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개발센터의 시설과 포장을 연중 활용하여 다수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준다.

②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 (운영) ① 농촌지도소장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개발센터를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둔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교육훈련) ① 농촌지도소장은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을 편성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①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
한 시설을 둈다.

1. 새기술 실증시험포 (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예절실)
9. 식품가공연구실

10. 원격화상 영농교육 시설

11. 경영상담실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시설

② 제 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제8조 (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표

시 설 명	규 모	주 요 장 비
○ 우량종묘 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25평내외	크린벤치, 멀균기, 교반기, 작업대,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냉방시설 등
- 순화온실	100평내외	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임체베드 스프링쿨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2발생기, 점적관수 등
- 중식망실 재배시설	100평내외	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 중식포장	300평내외	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관배수시설
○ 새기술 실증시험포		
- 비닐온실	100평내외	자동화하우스, 종합콘트롤시설, 온풍기,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등
- PET온실	100평내외	PET온실 종합콘트롤, 온풍기, CO2발생기
○ 지역특화작목시험포	800평내외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 가축질병진단실	25평내외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건열 멀균기, 우유정도측정기, 전산장비 등
○ 종합분석실	25평내외	원자흡광분광 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진탕기
○ 농작물 병해충기본예찰실	15평내외	미세영상확대장비, 농업기상관측장비 등
○ 식량작물예찰포	1200평내외	유아동, 곤충포장실, 포자체집기
○ 소득작목예찰포	600평내외	점적관수시설, 농작업기구 등

시 설 명	규 모	주 요 장 비
○ 농기계 공작실	90평내외	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 중소형 농기계수리정비 장비 일절
○ 농촌생활과학관 - 예절실	30평내외	• 조리실 : 씽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 등 • 예절실 : 병풍, 보료, 달레도구, 예절의복
○ 식품가공연구실	15평내외	• 바이오황온기, 전조기, 냉장고, 씽크대 등
○ 유통정보실	17평내외	자동응답기, 하이텔 및 천리안단말기, PC, 농업관련서적, 독서대 등
○ 영농교육 훈련실 - 대강의실	83평내외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 소강의실	30평내외	사청각 기자재 등
○ 전시실	10평내외	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자재 등 전시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시설명	운영 및 활용 방법
○ 우량증묘 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 증식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배양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보조인원(일용직인부임 2명 확보) • 지역특화 작목 무균증묘 생산보급 • 유전공학기술 농업인 교육장화
○ 새기술 실증시험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 새기술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새로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 설치 기술 •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농민 또는 품목별 모임체회의 교육시 실습장화 -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 • 보조인원 (일용직 인부임 1명 확보)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수작목 식재 (새로운 소득 작목) • 과수 신품종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品种 보급을 위한 모수원 활용
○ 가축질병진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의사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 임신진단 및 기생충 검사 통보 •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 가축질병진단 전문지도사 배치 • 보조인원 (일용직 인부임 1명 확보)
○ 종합분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 지역 토양 종합 관리지도 • 작물환경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보조인원 (일용직 인부임 1명 확보)
○ 농작물 병해증 기본 예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예찰답 및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 기본예찰 및 포장수시예찰 기본방제 통보 • 관찰포 매순조사 예찰정보 발표 • 보조인원 (일용직 인부임 1명 확보)

시 설 명	운 영 및 활 용 방 법
○ 농기계 공작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이론→실기실습 기능교육) • 수리,정비 회망농기계 수리 •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 기술교육 강화 • 농기계 교관 및 수리기사 확보
○ 농촌 생활 과학관 - 예절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장 •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 식품가공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여성 일감찾기, 가공식품 개발연구
○ 유통정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 영농설계 + 경영 + 기술정보 등 종합상담 • 경영상담요원 전담배치
○ 영농교육 훈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교육 장비 비치 •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 교육장 활용
○ 전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농민 교육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과학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별지 1]

■ 조례명 :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1항중 '보증금을 예치하여 온천개발에 필요시 사용하고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온천 이용허가 기간으로 하며'를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예치하며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온천 이용허가 기간으로 하고'로 한다.

1765

[별표]

온천수사용요금표중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한 일반목욕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개월 기준)

종별	기본요금		초과요금					
	사용량 (m ³)	사용료 (원)	1 단계		2 단계		3 단계	
			사용량(m ³)	사용료(원)	사용량(m ³)	사용료(원)	사용량(m ³)	사용료(원)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한 일반목욕장	1,000 까지	260,000	1,001~1,500	340	1,501~2,000	380	2,001이상	450

< 수정안 대비표 >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 (보증금 예치) ①온천수의 원활한 공급 및 예비수량 확보를 위하여 온천이용자로 부터 <u>보증금을 예치하여 온천개발에 필요시 사용하고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온천이용 허가기간으로 하며, 그 금액은 수안보 온천은 25,000,000원 범위로 하되 사유온천에 대하여는 두배를 초과치 못한다.</u>(단, 수안보 온천은 신규이용 허가외는 명의 허가변경부터 적용한다.)</p>								<p>제10조 (보증금 예치) ①-----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예치하며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온천이용 허가 기간으로 하고,</p>									
<p>[별표] 온천수사용요금표 (1개월 기준)</p>								<p>[별표] 온천수사용요금표 (1개월 기준)</p>									
종 별	기본요금		초 과 요 금						종 별	기본요금		초 과 요 금					
	사용 량 (m ³)	사용 료 (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용 량 (m ³)	사용 료 (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공중목욕장업 법에의한일반 목욕장	200 까지	56,000	201 ~ 300	550	301 ~ 500	600	501 이상	700	공중목욕장업 법에의한일반 목욕장	1,000 까지	260,000 ~ 1500	1001 ~ 2000	340	1501 ~ 380	2001 이상	450	

[별지 2]

■ 조례명 :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2항중 '둔다'를 '들수있다'로 한다.

안 제7조중 '부담한다'를 '부담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교육대상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원안	수정안
<p>제4조 (운영) ① (생략)</p> <p>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둔다.</p> <p>③ (생략)</p> <p>제7조 (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한다.</p>	<p>제4조 (운영) ① (원안과 같음)</p> <p>② - - - - - 들수있다.</p> <p>③ (원안과 같음)</p> <p>제7조 (소요경비) - - - - - 부담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교육대상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p>